



디지털자산법안의 주요 쟁점 및 입법 방향

2022. 9.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갑래

목 차

I

입법 배경

II

총론적 쟁점 사항

III

공시규제

IV

불공정거래규제

V

사업자규제

VI

기타 주요 규정

VII

결어



입법 배경

디지털자산시장 규제 입법화의 배경

투자자 보호

국제적
거래질서
확립

디지털화
대응

해당 현상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대한 평가를 별론으로 하고, 디지털자산시장이 단기간에 이미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해당 시장의 정보격차를 줄이고 사기적 행위로부터 투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

디지털자산거래의 초국 경성에 비추어, 효율적 시장규제, 디지털자산의 국제적 이동에 대한 정책적 대응,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글로벌 육성 등을 위해 국제적 정합성에 맞는 디지털자산거래 규율체계를 입법화하여야 함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자산이 출시되고 투자자산이 토큰화 되는 현상이 확산됨에 따라, 디지털자산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규율체계를 정비하고 육성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디지털자산시장의 문제점과 대응: 자본시장 유사성

문제점

- 새롭게 출시되는 디지털자산이 대규모 발행 · 유통시장을 형성하며 불특정다수인간에 거래되면서 시장참여자에 대한 정보격차, 불공정거래, 대리인비용 등의 문제가 자본시장 태동기와 유사하게 발생
 - [자본시장 복제 현상] 디지털자산시장이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디지털자산거래업자는 탈중앙화가 아닌 중앙집중화된 거래소 사업을 확장하였고, 탈중앙화 금융인 DeFi (Decentralized Finance) 사업자가 유사금융행위를 확대하였으며, 디지털자산시장 인프라가 자본시장 인프라를 벤치마크하며 구축되고 있음



대 응

- 디지털자산시장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공시, 불공정거래금지, 사업자규제 등 자본시장과 유사한 규제체계가 국내외적으로 입법화되어가고 있음
 - [해외] 해외에서 가장 체계화된 디지털자산 입법안으로 평가 받는 MiCA(Market in Crypto-Assets)규제안,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 디지털자산시장을 규율하는 책임있는 금융혁신법안(Lummis-Gillibrand 법안), 기타 주요국 디지털자산시장 규제 입법은 모두 공시, 불공정거래금지, 사업자규제를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음
 - [국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규제 입법안은 모두 공시, 불공정 거래금지, 사업자규제를 기본 틀로 구성

디지털자산시장의 특성 반영

디지털자산법안

디지털화

- 자산이 물리적 형태가 없이 디지털화 되어 존재
- 사업자의 암호키 관리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가 이용자자산보호의무의 핵심
- 디지털 네트워크상에서 자동화되어 거래되는 스마트계약의 실질심사 필요성

분산원장

-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탈중앙화 · 탈중개인화
- 일응 탈중앙화되어 발행인이 없어 보이는 경우에도 베일 (veil)을 벗겨보면 공시책임 등을 부담할 수 있는 적극적 참가자가 있음
- 장기적으로 탈중앙화자율조직 (DAO) 등에 대한 규제 정비 필요

국제화된 시장분할

- 디지털자산이 국제적으로 분산된 복수의 거래플랫폼에서 발행 · 유통
- 디지털자산시장 규제에 국제 공조 중요
- 디지털자산시장 육성에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 유지 필요

❖ 디지털자산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자본시장 규제원칙을 디지털자산시장에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한 것은 아님

- 디지털자산시장의 특성은 자본시장에도 추세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양 시장 규제 체계는 수렴하는 경향을 보임

국제증권감독기구의 디지털자산시장 규제 원칙

-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디지털자산시장의 공정성 및 효율성 유지와 투자자보호를 위해 기존의 증권규제 원칙이 디지털자산시장 규제의 중요한 지침이 된다고 함
 - › 디지털자산시장에 적용가능한 IOSCO 증권규제의 원칙은 다음과 같음

공시에 관한 규제 원칙

“투자자에게 충분하고 정확한 투자정보 제공”

- 공시의 충분성, 정확성, 적정성
 - ✓ IOSCO O&P* 16
- 이해상충 공시
 - ✓ IOSCO O&P 8

디지털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 원칙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선관의무 준수 및 사업건전성 유지”

- 이해상충 및 리스크 관리
 - ✓ IOSCO O&P 8, 31
- 공정한 규정을 통한 거래 신뢰성
 - ✓ IOSCO O&P 34
- 매매거래의 투명성 및 가격발견기능
 - ✓ IOSCO O&P 35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사이버 보안
 - ✓ IOSCO O&P 33
- 청산결제의 안정성
 - ✓ IOSCO O&P 38
- 사업건전성 유지 및 이용자자산보호
 - ✓ IOSCO O&P 30, 31, 32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규제 원칙

“투자자와 시장에 대한 투자정보제공 등에 있어 반사기적 행위 금지”

- 시세조종 기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적발 및 억제
 - ✓ IOSCO O&P 36
- 불공정거래규제의 포괄성, 실효성, 효율성
 - ✓ IOSCO O&P 10, 11, 12

* IOSCO, 2017, Objectives and Principles of Securities Regulation

국회발의 디지털자산업 관련 제정안 체계 비교

- [디지털자산법안의 구조적 유사성] 현재 국회에 발의된 8개의 디지털자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각각 차별성을 가지고 있지만 아래와 같은 구조적 유사성을 보임
 - ※ 본 발표문에서 제안하는 입법논의 사항은 일차적으로 아래의 국회 발의 제정안을 반영하였음

이용우의원안	김병욱의원안	양경숙의원안	권은희의원안	민형배의원안	윤창현의원안	김은혜의원안	민병덕의원안
제1장 총칙(§1~§3)	제1장 총칙(§1~§5)	제1장 총칙(§1~§3)	제1장 총칙(§1~§3)	제1장 총칙(§1~§4)	제1장 총칙(§1~§7)	제1장 총칙(§1~§7)	제1장 총칙(§1~§4)
제2장 가상자산사업자 (§4~§25)	제2장 가상자산사업의 신고 및 등록(§6~§9)	제2장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및 이용자 보호 (§4~§19)	제2장 가상자산거래업의 인가(§4~§7)	제3장 디지털자산사업자의 등록 등(§10~§14)	제2장 디지털자산사업 육성 (§5~§9)	제2장 가상자산사업발전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8~§18)	제2장 가상자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8~§14)
제3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26)	제4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등(§18~§21)	제3장 불공정거래 금지 및 감독(§20~§31)	제3장 가상자산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8~§18)	제4장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15~§28)	제4장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26~§32)	제4장 가상자산의 분류에 따른 인가 등 (§18~§20)	제4장 디지털자산의 사전투자모집과 공식 발행 거래 (§30~§33)
제4장 가상자산업관계 단체(§27~§30)	제5장 가상자산협회 (§22~§27)	제4장 가상자산 관계 기관(§32~§39)		제6장 디지털자산사업자 협회(§30~§33)	제6장 가상자산사업자 단체(§42~§44)	제7장 가상자산사업자 협회(§39)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 금지(§28~§33)
제5장 벌칙(§31~§35)	제7장 처벌(§32~§34)	제5장 벌칙 등(§40~§42)	제4장 보착(§19~§20)	제7장 감독 및 처분 (§34~§37)	제7장 감독 및 처분 (§45~§52)	제10장 감독 및 처분 (§40~§42)	제8장 감독 및 처분 (§61~§68)
		*제3장에서 규정		제8장 벌칙(§38~§43)	제8장 벌칙(§53~§58)	제11장 벌칙(§43)	제9장 벌칙(§69~§74)

||

총론적 쟁점 사항

증권형 토큰 준거법 조항

- 토큰화된(tokenized) 증권인 증권형 토큰의 준거법에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고 디지털자산법의 적용을 배제
 - › 증권형 토큰은 본질적으로 증권이기 때문에, 해석론상으로 당연히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으며 디지털자산법 적용배제 규정은 선언적 의미에 불과
 - › 증권형 토큰에 대한 디지털자산법 적용배제를 통해, 금융투자상품 규제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블록체인 혁신성을 빙자한 증권규제의 우회를 막을 수 있음
- [해외 입법례] 증권형 토큰에 대한 디지털자산법 적용배제는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취하고 있는 규제 원칙임
 - › EU의 MiCA규제안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MiCA의 적용을 배제 (MiCA § 2(2)(a))
 - › 증권형 토큰에 대해 디지털자산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해외 입법례는 찾기 어려움

디지털자산법의 역외적용 조항

- [효과주의] 디지털자산 거래행위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 국내 디지털자산법을 적용한다는 조항 필요
 - › 국내 디지털자산법이 역외적용 조항 없이 제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속지주의) 또는 내국인이 행한 행위(속인주의)에 대해서만 적용됨
 - › 디지털자산이 국제적으로 분할된 시장에서 다국적으로 유통되는 현실을 감안 할 때, 디지털자산법의 효력을 한 국가의 지역적 규제관할 범위내로 한정시키는 것은 디지털자산시장 규제의 실효성을 저하시킴
 - 현재 디지털자산 불공정거래행위(디지털자산 시세조종 등), 사이버보안사건(해킹 등) 등이 국제적으로 조직화되어 나타남
- [국제 공조] 디지털자산법상 역외적용 조항이 있더라도 국외에서 법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효율적 역외규제를 위해서는 디지털자산시장 감독기구간의 국제적 공조체계를 공고히 구축하는 것이 중요
 - › 이미 디지털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AML/CFT) 분야에서는 FATF 권고사항을 국제기준으로 하여 39개 회원국(우리나라 포함)이 견고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해외 입법례] 미국의 경우, Alcoa 판결, Schoenbaum 판결 등을 원용하여 디지털자산 거래에 있어서도 효과주의 적용 가능
 - › EU의 경우, MiCA규제안은 회원국 감독기관간의 국제공조 의무를 명문화 (MiCA § 83)

디지털자산산업 진흥 · 육성 관련 조항

- 국회에 발의된 디지털자산법 제정안은 이용자보호와 시장질서확립에 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지만, 동시에 디지털자산산업(가상자산산업)의 진흥 · 육성에 관한 내용을 디지털자산 시장규제와 함께 포함하고 있는 제정안도 있음
 - › 국회 발의 제정안에 포함된 디지털자산산업의 진흥· 육성에 관한 내용으로는 블록체인산업 발전정책에 관한 국가의 책무 조항,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계획 조항, 디지털자산산업 발전기금 설치 조항 등이 있음
- [규제와 육성의 조화] 디지털자산산업의 규제와 육성을 균형 잡힌 시각에서 접근하되, 단일 주무부처가 규제와 육성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에 유의
 - › 디지털자산법은 규제의 결과 이루어지는 시장의 질서유지와 신뢰성 확보를 통해 건전한 디지털자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 효과를 발생시킴
 - › 추가적인 블록체인산업 육성 방안 등은 관련 주무부처가 개별 입법에 근거하여 추진
- [해외 입법례] 단일 법령 체계하에서 디지털자산산업의 진흥 · 육성과 디지털자산시장의 규제를 단일 주무부처가 함께 수행하는 해외 입법례는 찾기 어려움

III

공시규제

발행인
자격과 의무

발행공시

유통공시

발행인의 자격과 의무

필요성

- 디지털자산의 발행인은 거래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자에 비해 정보우위에 있다는 점에서 거래자를 위한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발행인 자격을 제한하여야 함

주요 내용

- [발행인의 자격] 디지털자산 발행인의 자격을 국내외 법인으로 제한
- [발행인의 의무] 발행인에게 공시의무 및 신의성실의무 부과
 - › (공시의무) 발행인이 공모 방식으로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공시서류(디지털자산계획서)를 제출하고 시장참여자에게 공시하도록 의무 부과
 - › (신의성실의무) 발행인의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거래자에 대해 차별하거나 권리를 남용하여서는 안됨

해외 입법례

- EU의 MiCA 규제안은 발행인의 자격을 법인(legal entity)으로 제한하고 공시의무 및 신의성실의무를 부과 (MiCA § 4)
- 디지털자산 발행인의 법적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고 공시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국제적 입법 추세임

발행공시

필요성

- 디지털자산이 불특정다수인을 위한 시장을 형성하며 발행·유통되고, 발행인과 매수인간의 정보비대칭이 크기 때문에 의무공시제도를 통한 정보격차의 해소가 필요
 - › 디지털자산의 투자자산적 성격과 원본손실위험이 커짐에 따라, 투자정보의 제공 없는 매수인 위험부담(Caveat Emptor) 논리가 수용되기 어려움

주요 내용

- [디지털자산계획서 신고의무] 기존의 백서보다 투자정보제공 기능이 강화된 국문으로 쓰여진 디지털자산계획서를 감독당국에 제출하고 시장참여자에게 공시
 - › 구체적 사업계획, 조달된 자금 사용계획, 투자위험, 보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와 의무 등 실질적 투자정보가 디지털자산계획서의 필수기재 사항으로 입법화되어야 함
- 비트코인과 같이 발행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디지털자산거래를 중개하며 수수료를 수취하는 디지털자산사업자가 발행인에 준하여 발행공시 의무를 이행

해외 입법례

- EU의 MiCA 규제안은 구체적으로 기술(detailed description)되어야 할 발행인 백서의 주요 투자정보를 규정화 함 (MiCA § 5)
- 미국 등 주요국도 구체적인 투자정보가 포함된 백서발행을 의무화하고, 중요투자정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입법 트렌드를 보임

유통공시

필요성

- 디지털자산계획서(발행공시)의 중요 내용이 변경되거나 이행(불이행) 된 경우, 해당 중요투자정보를 즉시 시장참여자에게 공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디지털자산 락업(lock-up) 배분계획의 이행, 마일스톤 달성을 여부 등의 정보는 해당 디지털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투자정보로서 시장참가자에게 공정하고 즉각적인 방식으로 공시되어야 함

주요 내용

- [계획서 변경사항 신고의무] 상장 후 디지털자산계획서의 중요 내용이 변동되거나 이행(불이행)되는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신고 및 공시의무를 부여
- 디지털자산거래업자는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상장(거래지원)규정을 통해 발행인에게 추가적인 수시공시의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 시장 풍문의 사실여부 또는 급격한 가격·거래량 변동에 대해 발행인에게 답변을 요구하고 해당 사항을 공시하는 조회공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음

해외 입법례

- EU의 MiCA 규제안은 거래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백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발행인이 해당 백서를 수정하고 공시하도록 함 (MiCA § 11)
- 미국의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안”(Lummis-Gillibrand 법안)은 투자성은 있으나 권리성이 명확하지 않은 디지털자산을 보조자산(ancillary asset)으로 분류하여 상품(commodity)으로 의제하고, 증권법상의 정기공시의무를 적용 (Lummis § 301)

IV

불공정거래규제

미공개중요
정보이용
행위 금지

시세조종
금지

부정거래
행위 금지

시장감시
시스템

원칙 목차

목차

원칙 목차

지수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금지

필요성

- 디지털자산시장에서 내부자 등이 투자정보에 있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디지털자산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비용이 시장불신으로 인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

주요 내용

-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취득한 자가 해당 정보를 자신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
 - › 입법 과정에서 내부자 등의 범위, 정보의 중요성, 미공개 기준, 금지되는 이용행위유형 등에 관한 구체적 요건이 논의되어야 함

해외 입법례

- EU의 MiCA 규제안은 내부자정보의 불법공개, 해당 정보를 이용한 거래행위, 해당 거래의 권고행위를 폭넓게 금지 (MiCA § § 78&79)
- 미국에서 디지털자산은 상품으로 분류되며, 상품거래법령(7 USC § 9, 17 CFR § 180. 1)에 따라 내부자거래 규제가 가능
 - › 미국 SEC는 적극적으로 디지털자산의 증권성을 인정하며 증권법상의 내부자거래 금지규정 적용 (코인베이스 내부자거래 사건)

시세조종 금지

필요성

- 디지털자산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정보인 가격정보를 인위적으로 조작함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시장참여자를 기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 거래의 사기적 요소를 입증할 필요없이 시장에서의 시세조종 행위를 사기적 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할 필요가 있음

주요 내용

- 디지털자산시장의 자유로운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형성을 인위적으로 왜곡시키는 시세조정을 금지
 - › 입법 과정에서 시세조종 행위의 구체적 유형, 시세조종의 예외가 되는 시장조성 요건 등이 논의되어야 함

해외 입법례

- EU의 MiCA 규제안은 다양한 형태의 시세조종을 유형화하여 금지 (MiCA § 80)
- 미국 상품거래법상 디지털자산의 시세조종 금지 (7 USC § 9, 17 CFR § 180. 2)

부정거래행위 금지

필요성

- 복잡다변한 디지털자산시장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모두 포섭하여 규제하기 위한 포괄주의 규정이 필요함

주요 내용

- 디지털자산의 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부정거래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

› 부정거래행위 예시

-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사용행위
- 중요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유포, 부실표시 또는 중요 기재(표시)의 누락행위
- 거짓시세 이용행위
- 디지털자산거래 목적 또는 시세변동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 행위 등

해외 입법례

- EU의 MiCA 규제안은 포괄적 부정거래행위 금지조항을 두고 있지 않지만, 내부자거래 금지조항 및 시세조종 금지조항을 폭넓게 적용하고, EU 회원국이 자국의 디지털자산법에 개별적으로 불공정거래 금지 조항을 추가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규제공백을 매울 수 있음
- 미국 상품거래법은 디지털자산거래에 관한 부정거래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7 USC § 9, 17 CFR § 180. 1). 바이든 정부는 CFTC가 디지털자산시장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불공정거래 조사 및 감독을 할 것을 주문 (디지털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시장감시시스템

필요성

- 감독당국이 디지털자산시장의 대량 거래를 개별적으로 감시하고 조사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디지털자산사업자가 자동화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구축하여 복잡하고 다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심리할 필요가 있음
 - › 특히 디지털자산시장이 국제적으로 분할되어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은 매우 중요

주요 내용

- 디지털자산거래업자에게 해당 디지털자산시장의 거래, 주문·호가, 풍문 등을 감시하고, 가격 또는 거래량을 비정상적으로 변동시키는 이상거래를 적발하여 심리하며, 위법이 의심되는 상황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업무를 부여 (자율규제업무)
 - › 복수의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시장감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보다 사업자협회를 통해 호가정보 및 거래 정보를 통합한 시장감시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 (Deloitte, 2021, Market Manipulation in Digital Assets)

해외 입법례

- EU의 MiCA 규제안은 디지털자산사업자가 불공정거래 감시·적발시스템을 갖출 것을 사업자 승인 요건으로 함 (MiCA §§ 54(2)&61(9))
- 미국의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안”은 디지털자산거래소에 시장감시의무를 부여 (Lummis § 404)

V

사업자규제

진입규제

행위규제

진입규제

필요성

- 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인적, 물적, 재산적 요건을 심사하고 재무건전성과 건전한 영업질서의 준수 여부를 감독”할 필요가 있음 (대법원 선고 2000 도357 취지 적용)

주요 내용

- 미등록 디지털자산업 금지, 진입요건 및 절차, 진입요건 유지요건, 변경등록 신청, 등록취소, 이해상충 방지체계, 외국 디지털자산사업자 등록 등에 관한 조항으로 구성
 - › 입법 과정에서 디지털자산사업자에 대한 합리적 진입규제와 건전한 육성을 조화하여 진입요건의 수준을 정하여야 함

해외 입법례

- EU의 MiCA규제안 등 주요국 디지털자산법안은 모두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인적, 물적, 재산적 요건에 관한 진입규제 조항을 두고 있음

행위규제: 신의성실의무

필요성

- 대규모로 성장한 디지털자산시장에서 사업자가 전문성, 정보력, 경제력에 있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과 이용자이익 보호의무를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디지털자산법령이 정비되지 못하고 공정한 계약 관행이 확립되지 못한 현 상황에서, 시장신뢰성 유지를 위해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영업행위는 신의칙에 기반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큼

주요 내용

- 신의성실의무는 이용자를 위한 선관주의의무, 이용자이익 보호의무, 자기계약금지, 최선집행의무 등으로 구체화됨
 - 디지털자산사업자에 대한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은 디지털자산법상의 이용자보호가 형식적인 것이 아닌 실질적인 것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기능을 함

해외 입법례

- 신의성실의무는 신인의무, 최선집행의무 등 디지털자산사업자 행위규제의 핵심 원칙으로서 EU의 MiCA규제안 등 주요국 디지털자산법안에 포함되어 있음

행위규제: 디지털자산 보관의무

필요성

-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이용자 예탁금은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제도적으로 명확히 분리보관되지만, 이용자로부터 수탁 받은 디지털자산의 구분관리가 제도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파산절연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수탁자산 보관의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 내용

- 디지털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수탁 받은 디지털자산을 동일종목·동일수량의 원칙하에 자기 고유재산과 분리보관하고 구분관리하여야 함
 - > 디지털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수탁 받은 디지털자산의 보관업무를 보관관리사업 자격(보안기준 등 충족)이 있는 디지털자산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 > 사이버보안 차원에서, 디지털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수탁 받은 디지털자산의 콜드월렛(cold wallet) 의무보관비율을 제도화

해외 입법례

- MiCA규제안에 따르면, 고객의 디지털자산을 보관하는 디지털자산사업자는 파산절연 등 고객자산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 (MiCA § 63)
- 미국 뉴욕주 비트라이선스 규정에 따르면,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이용자가 예탁한 디지털자산은 해당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23 CRR-NY 200.9).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안”도 같은 취지의 조문 포함
 - > 미국 SEC는 디지털자산증권의 매매, 수탁, ATS 운영에 종사하는 브로커-딜러의 고객자산보호의무에 대한 SEC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SEC, 2021, Release 34-90788) 하였는데, 해당 고객자산보호의무는 보관관리업무를 하는 디지털자산사업자에게도 적용 가능

행위규제: 불완전판매 금지

필요성

- 디지털자산거래는 가격변동성과 원본손실가능성이 큰 고위험투자라는 점에서, 이용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이용자가 본인에게 적합한 디지털자산을 추천 받고, 해당 자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산을 구매하는 투자권유준칙 및 불완전판매 규제가 필요

주요 내용

- 디지털자산사업자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이용자확인의무,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을 법제화하여야 함
 - ▶ 투자권유가 없는 비대면거래에 있어서도, 이용자확인의무,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디지털자산 영문 백서의 국 문화 등)는 적용됨

해외 입법례

- EU의 MiCA 규제안은 디지털자산 거래에 관해 자문하는 디지털자산사업자에게 고객확인의무를 부여하고 적합성·적정성의 원칙을 적용 (MiCA § 73)

행위규제: 이해상충 방지

필요성

- 국내 디지털자산시장이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디지털자산사업자의 경영 규제와 내부통제 규제가 없었다는 점에서, 현재의 디지털자산사업자 이해상충 규제공백을 메울 필요가 있음

주요 내용

- 디지털자산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이용자간, 이용자 상호간의 이해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입법 과정에서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의 파악·평가, 공시, 내부통제체계 구축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논의하여야 함

해외 입법례

- EU의 MiCA규제안 등 주요국 디지털자산법안은 이해상충 방지에 관한 다수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특히 미국 SEC는 디지털자산사업자의 거래소기능과 예탁기능, 거래소기능과 시장조성기능의 분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기타 행위규제에 관한 입법 논의사항

- [명의대여의 금지] 디지털자산사업자는 제3자가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대여하여 영업을 하는 것을 허락하여서는 안됨
- [자료의 기록·유지] 디지털자산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의 유지 · 운영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고 일정기간 유지할 의무를 부여
- [수수료 규제] 디지털자산사업자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해 공정한 부과기준을 정하여 이를 공시하도록 함
 - › 디지털자산사업자는 정해진 수수료 이외의 재산상 이익을 수취하지 못함
- [광고규제] 허위 · 과장광고 금지 등에 관한 일반 원칙을 규정화하고, 구체적인 광고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하위 법령으로 규율
- [서비스제공 중지 금지] 디지털자산사업자가 매매 · 청산 · 결제, 보관관리, 입출금 등의 서비스업무 제공을 정당한 사유없이 중지하여서는 안됨
- [겸영업무 또는 부수업무] 디지털자산사업자의 겸영업무 또는 부수업무로 인해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

VI

기타 주요규정

디지털자산업협회

필요성

- 디지털자산업계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효과적인 이용자 보호, 디지털자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디지털자산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를 조직하여 업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참여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복잡다변한 디지털자산업계에서 사업자들이 전문적이고 상호합의에 기초한 협회규정을 통해 자율규제, 사업자 윤리 및 베스트프랙티스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주요 내용

- 입법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디지털자산업협회의 주요 업무로는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자율규제, 사업자의 법령준수에 관한 지도·권고, 이용자와의 분쟁조정 및 민원처리, 법령에 따라 위탁 받은 업무 등을 들 수 있음
 - 협회가 아닌 자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협회규정 변경에 관한 감독기관 보고의무 등에 관한 규정도 입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함

해외 입법례

- 미국의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안”은 디지털자산 감독기구간의 효율적 공조를 강조하며 자율규제 및 디지털자산협회에 관한 제도화 근거를 마련 (Lummis § 807)
- 스위스, 일본, 싱가포르는 자율규제기구(SRO)를 활용하여 디지털자산거래의 규제공백을 메우고 있음

스테이블코인

필요성

- 테라-루나와 같은 알고리즘스테이블코인이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주고 디지털자산시장의 안정성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자산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의 금융시스템위험, 결제위험, 대량상환요청위험 등이 부각됨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체계 마련이 필요

주요 내용

- 입법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음
 - › 스테이블코인의 정의 (알고리즘스테이블코인 배제 여부)
 - › 스테이블코인의 가치안정성을 담보하는 준비자산 요건
 - ›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허가 및 변경허가의 요건
 - ›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계획서에 기재되어야 할 공시 사항

해외 입법례

- EU의 MiCA 규제안은 스테이블코인을 자산준거토큰(ART) 및 전자화폐토큰(EMT) 나누어 규제 (MiCA Titles III&IV)
- 미국의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안”은 “책임있는 지급혁신”의 장(title)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체계적으로 규제 (Lummis Title VI)

VII

결 어

국내 디지털자산법 제정안의 입법방향

- 국내 디지털자산시장의 지속가능성과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하고, 현재 발생하는 규제공백을 메우는 방향으로 디지털자산법 제정을 추진





Thank You!